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정 부 감 사 조 직 기 능 강 화 를 위 한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와
그 소 속 기 관 과 직 제 등 24개
대 통 령 령 의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4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,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, 부처별 감사업무의 특성과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강 기준을 적용하여,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인력 총 5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1. ~ 7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
그 소속기관과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799”를 “80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89”를 “79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758”을 “760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779”를 “78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42”를 “74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(검사포함) “733”을 “735”로 한다.

제3조(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703”을 “1,70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73”을 “1,67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02”를 “1,607”로 한다.

제4조(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755”를 “75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48”을 “75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63”을 “667”로 한다.

제5조(「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68”을 “67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64”를 “66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43”을 “646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811”을 “81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01”을 “80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750”을 “751”로 한다.

제7조(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54”를 “65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47”을 “65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18”을 “623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10”을 “61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06”을 “61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89”를 “593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16”을 “41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15”를 “41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89”를 “391”로 한다.

제10조(「법제처 직제」의 개정)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별표 1 중 총 계 “246”을 “2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45”를 “246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30”을 “231”로 한다.

제11조(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86”을 “6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85”를 “68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66”을 “668”로 한다.

제12조(「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705”를 “70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04”를 “706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92”를 “694”로 한다.

제13조(「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27”을 “1,6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25”를 “1,62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08”을 “1,610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71”을 “37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70”을 “37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60”을 “361”로 한다.

제15조(「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561”을 “56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60”을 “56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50”을 “551”로 한다.

제16조(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295”를 “29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91”을 “29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84”를 “285”로 한다.

제17조(「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86”을 “287”로 하고, 소방공무원 계 “239”를 “240”으로 하며, 소방준감 이하 “233”을 “234”로 한다.

제18조(「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351”을 “35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50”을 “35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37”을 “339”로 한다.

제19조(「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27”을 “33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21”을 “32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10”을 “314”로 한다.

제20조(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476”을 “47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5”를 “476”으로 하

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65”를 “466”으로 한다.

제21조(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34”를 “4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33”을 “43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20”을 “421”로 한다.

제22조(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71”을 “27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69”를 “27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44”를 “246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20”을 “22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15”를 “216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08”을 “209”로 한다.

제24조(「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)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96”을 “29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92”를 “293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항공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5”를 “6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2 중 총계 “296”을 “29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92”를 “293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항공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5”를 “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799</u>	<u>801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789</u>	<u>791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758</u>	<u>760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6]

법무부 공무원 정원표(제5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79</u>	<u>781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42</u>	<u>744</u>	+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(검사 포함)	<u>733</u>	<u>735</u>	+2
·	·	·	
·	·	·	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(제70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55</u>	<u>759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48</u>	<u>752</u>	+4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63</u>	<u>667</u>	+4
·	·	·	

[별표 3]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11</u>	<u>81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801</u>	<u>80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750</u>	<u>75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54</u>	<u>659</u>	+5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647</u>	<u>652</u>	+5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18</u>	<u>623</u>	+5
•	•	•	
•	•	•	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(제51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10</u>	<u>614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06</u>	<u>610</u>	+4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89</u>	<u>593</u>	+4
·	·	·	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46</u>	<u>247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45</u>	<u>246</u>	+1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30</u>	<u>231</u>	+1
•	•	•	

[별표 1]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27</u>	<u>1,629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1,625</u>	<u>1,627</u>	+2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608</u>	<u>1,610</u>	+2
•	•	•	

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(제4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51</u>	<u>35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350</u>	<u>35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337</u>	<u>339</u>	+2
•	•	•	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<u>271</u>		<u>273</u>	+2	
		•	•		•		
		•	•		•		
일	반	직	<u>269</u>		<u>271</u>	+2	
		•	•		•		
		•	•		•		
3	급	또는	<u>244</u>		<u>246</u>	+2	
		4급	•		•		
		이하	•		•		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96</u>	<u>297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92</u>	<u>293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·시설주사·전산 주사·방송통신주사·항 공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 는 기록연구사	<u>5</u>	<u>6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의2]

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96</u>	<u>29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92</u>	<u>293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 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항 공주사 · 방재안전주사 또 는 기록연구사	<u>5</u>	<u>6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2